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2.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4월 27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5월 17일) 상정보류
제68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1999년 1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현재 매월 반상회날 우리 구 반회보를 발행하고 있으나 반상회지 발행 및 제작에 대한 제반규정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반회보 제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기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반회보의 제호는 “내고장 영등포”로 함(제2조)
 - 반회보는 월 1회, 반상회날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4조)
 - 반회보의 게재내용은 구정, 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발전을 도모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함(제6조)
 - 반회보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제7조제1항)
 - 반회보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0조제1항)
 - 반회보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반회보의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로 정하고 매월 1회 반상회날 기준으로 발행하고 게재내용은 구정과 의정소식 및 교양, 문화, 체육 등의 지역사회 발전사항이며,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 명예기자 위촉임명 조항과 광고시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등의 합목적적인 종합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반회보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기타 관계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1999. 4.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사유

현재 매월 반상회날 우리 구 반회보를 발행하고 있으나, 반상회지 발행 및 제작에 대한 제반규정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반회보 제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기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반회보의 제호는 “내고장 영등포”로 함(제2조)
- 반회보는 월 1회, 반상회날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4조)
- 반회보의 게재내용은 구정, 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발전을 도모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함(제6조)
- 반회보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제7조제1항)
- 반회보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0조제1항)
- 반회보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없음
- 나. 합 의 사 항 : 없음
- 다. 예 산 조 치 : 없음
- 라.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이하 “반회보”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반회보의 제호는 “내고장 영등포”로 한다.

제3조(발행인) 반회보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일 등) 반회보는 월 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주관) 반회보의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주관한다.

제6조(게재내용) 반회보 게재내용은 구정·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반회보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 “내고장 영등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사 또는 출판사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문 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반회보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2. 반회보 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 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기타 반회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공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구청장은 반회보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명예기자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반회보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를 할 수 있다.

③광고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시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⑤유료광고에 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산정기준,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회보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